

검 토 보 고 서

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

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경형

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3. 제안이유

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출연 예정액 : 3,500백만원(도비)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2015년 결산액	2016년 예산액 (최종) (C)	2017년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계	3,500	3,500	6,443	3,500	△2,943	-
인건비·운영비	2,000	2,000	3,443	2,000	△1,443	-
연구개발비	1,500	1,500	3,000	1,500	△1,500	-

5. 검토의견

- 가. 본 출연 계획안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해당 소관부서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소요예산을 철저히 검토해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서
- 나.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·운영 및 지원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법인이며 산하기관으로 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침복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’는 특별법 규정에 의거 지자체에서 운영·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
- 다. 이와 관련하여, 오송침복단지 유치 시 우리 도 제안사항인 ‘재단 전략 기획본부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’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침복단지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- 라. 그러나, 향후 오송침복재단의 운영·인건비를 더 부담시키려는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충청도의 가용예산이 줄어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므로 핵심연구지원시설 운용인력 재산정 및 인건비·운영비 전액국비 지원을 기재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시킬 사안임